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1인)

찬 성 자: 김근한·김민성·김영태·이명희
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8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발달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에게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미시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더 높이고자 하며,

단기거주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명시(안 제4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구미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안 제13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부서검토: 장애인복지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상적인”을 “일상생활 및”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기결정권 보장)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1항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미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단기거주시설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보호자 양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하 “단기거주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를”을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을”로, “평생교육센터 시설”을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에 출입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제10조·제11조 (생략)

<신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3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

1. (현행과 같음)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1조·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3조(단기거주시설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보호자 양육부담 감소를 위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하 “단기거주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

-----.

② -----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을 ---

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
여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 ~ 제16조 (생 략)

--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평생교육센터 및 단기거주시설
에 출입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
터 제16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 「발달장애인법」 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주요 사항

-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명시(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명시(안 제13조)

□ 검토 결과

- 구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립지원을 도모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요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구미시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으로 촘촘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장애인 긴급돌봄 시행으로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등 구미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소요예산: 2,966백만원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안 제13조(단기거주시설 설치)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 기준 예산 계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신축비용	520	1,300				1,820
	○운영비	-	-	372	382	392	1,146
	소계(b)						
□ 총 비용(a-b)		520	1,300	372	382	392	2,96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200					200
도 비		140		74	76	78	368
시 비		180	1,300	298	306	314	2,398
민 간							
기 타							
합 계		520	1,300	372	382	392	2,966

5. 부대의견: 현재 사업 추진 중

6.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윤유진(☎054-480-51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신축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총계	1,820		
소계	1,568		86.1%
공사비	1,518	<input type="checkbox"/> 공사비 × 1식 = 1,517,700,000원 - 건축설비공사 × 1식 = 1,167,700,000원 - 전기소방공사 × 1식 = 150,000,000원 - 토목공사 × 1식 = 200,000,000원	
		<input type="checkbox"/> 농지조성비 × 3식 = 50,300,000원	
소계	120		6.6%
취득비	39	<input type="checkbox"/> 토지매입비 × 1식 = 39,000,000원	
	81	<input type="checkbox"/> 지장물보상비 × 1식 = 81,000,000원	
소계	132		7.3%
용역비	110	<input type="checkbox"/> 실시설계용역 × 1식 = 80,000,000원 <input type="checkbox"/> BF인증 × 1식 = 30,000,000원	
	22	<input type="checkbox"/> 감리용역 1식 - 건축 감리 × 1식 = 13,000,000원 - 소방 감리 × 1식 = 9,000,000원	

※ 공사비 산정: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물가 상승률 등 감안 적용

※ 설계비 산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4] 적용
제2종(보통), 20억원 이하, 10억이상 직선보간법 중급의 건축요율(5.34%) 적용

※ 토지매입비 산정: 감정평가 적용

※ 지장물보상비 산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 적용

※ 감리비 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4]적용 20억원 이하, 10억이상 직선보간법 1.23% 적용
- 전기, 소방 수의계약 기준으로 적용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2026)	2027	2028	2029
세 입 (A)	계	-			
	:				
지 출 (B)	계	-	372	382	392
	인 건 비	-	345	355	365
	시설운영비	-	27	27	27
	감가상각비				
	:				
손 익(C=A-B)		-	△372	△382	△392